###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(최보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043 발의연월일: 2025. 4. 22.

발 의 자:최보윤·김선교·서천호

최은석 · 강승규 · 김용태

김상훈 • 박준태 • 서명옥

이달희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"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 게 된 경우"에 해촉이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"심신장애"를 전제로 표현하고 있어서 장애인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심화시키고, "심신장애"는 무조건 해촉 및 해임 사유가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"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"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"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·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"로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

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.

#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- 제1조(「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3.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·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
- 제2조(「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생물자원 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3.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·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
- 제3조(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1.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·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 ① ~	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환경부장관은 원장이 다음	4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, 상	
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제4호는	
제외한다)에는 원장에게 해임	
을 권고할 수 있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	3.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
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	<u>신체적·정신적 질환으로 직</u>
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	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
	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
	<u>우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
#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 ①	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④ 환경부장관은 관장이 다음	4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, 상	
임이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
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	
수 있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	3.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
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	신체적·정신적 질환으로 직
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	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
	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
	<u>우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
# 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위원의 해임 및 해촉) 환	제31조(위원의 해임 및 해촉)
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
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	
해촉(解囑)할 수 있다.	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	1.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
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	<u>신체적·정신적 질환으로 직</u>
	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
	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
	<u>우</u>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